

제 3 장 서비스무역

제 3.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이 그리고,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취하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장은 제4.1조에 규정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의 조치에 적용된다. 이 장은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운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운수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3.4조·제3.5조 및 제3.6조는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서비스의 정부기관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규정 또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2 조 GATS 규정의 통합

이 장의 규정에서 GATS 규정이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언제나, GATS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양해된다.

가. “회원국”이라 함은 “당사국”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회원국 간”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을 말한다.

나. “양허표”라 함은 제3.16조에 규정되고, 부속서 VII에 포함된 양허표를 말한다. 그리고

다. “구체적 약속”이라 함은 제3.16조에 규정된 양허표 상의 구체적 약속을 말한다.

제 3.3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1. GATS 제1조의 다음의 정의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가. “서비스무역”

나. “서비스”. 그리고

다.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2.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¹⁾

3. “당사국의 자연인”은 당사국의 법률상, 그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그 당사국이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영주권자에게도 자국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영주권자이다.

4. “당사국의 법인”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1)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1)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또는

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1)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2) 가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1)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아니하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와 같은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공급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장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상업적 주재에까지 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 부분에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5. GATS 제28조의 다음의 정의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 가. “조치”
 - 나. “서비스의 공급”
 - 다.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
 - 라. “상업적 주재”
 - 마. 서비스의 “분야”
 - 바.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 사.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
 - 아. “서비스 소비자”
 - 자. “인”
 - 차. “법인”
 - 카. “소유”·“지배” 및 “제휴”. 그리고
 - 타. “직접세”

제 3.4 조 최혜국대우

1. GATS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부속서 VIII에 포함된 MFN 면제목록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당사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당사국들 중 하나가 GATS 제5조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고 통보한 그 밖의 협정에서 부여하는 대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이 제2항에 규정된 형태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협정에서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요청한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4. 인접국에 부여되는 혜택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2조제 3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5 조 시장접근

시장접근에 대한 약속은 GATS 제1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6 조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은 GATS 제17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7 조 추가적 약속

추가적 약속은 GATS 제18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8 조 국내규제

국내규제에 대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9 조 인 정

1.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된 면허나 증명을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기존의 또는 장래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자국과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이나 약정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된 면허나 증명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다른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2.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 또는 자율적인 인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 특히 GATS 제7조와 합치하여야 한다.

3. 부속서 IX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공급자의 교육이나 경험, 자격, 면허, 증명 또는 인증의 상호인정에 적용된다.

제 3.10 조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사국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GATS 부속서」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부속서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11 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8 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12 조 영업관행

영업관행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9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13 조 지불 및 송금

1.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3.14조에서 상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다른 당사국과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경상거래에 대하여 국제적인 송금 및 지불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에 합치하는 외환조치의 이용을 포함하여,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른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은,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거래에 대하여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게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3.14 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 당사국들은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그러한 제한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3. 그러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은 이를 신속하게 공동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3.15 조 예 외

일반적 및 안보상의 예외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14조와 제14조의2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16 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3.5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대하여, 각 양허표는 GATS 제20조제1항가호 내지 라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한다.

2. 제3.5조 및 제3.6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GATS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리된다.

3. 당사국들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부속서 VII에 규정된다.

4. 통신서비스와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적용되는 시장접근·내국민대우 및 추가적 약속의 특별한 측면은 부속서 X 과 XI에서 다루어진다.

제 3.17 조 양허표의 수정

당사국들은, 어느 당사국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상의 구체적 약속의 수정 또는 철회를 고려하기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그 협의는 요청 당사국이 요청한 후 3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그 협의에서, 당사국들은 호혜적인 약속의 일반적인 수준이 그러한 협의 이전에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서 규정된 것보다 무역에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허표의 수정은 제8.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제 3.18 조 투명성

투명성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3조 제2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19 조 검 토

당사국들 간 서비스무역의 추가적인 자유화를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각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와 MFN 면제목록을 매 2년마다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한 첫 번째 검토는 이 협정이 발효한 이후 늦어도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3.20 조 부속서

이 협정에 첨부된 다음의 부속서는 이 장의 통합된 일부를 구성한다.

- 부속서 VII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 부속서 VIII (MFN 면제목록)
- 부속서 IX (상호 인정)
- 부속서 X (통신 서비스). 그리고
- 부속서 XI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